EAID-CG

수 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 목: 지휘 지침서 #8: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

1.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위법행위 혐의에 관한 처분 보류 정책 관련 지침을 대체함. 이는 폐지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함.
2. 범위. 본 정책은 미2사단 고등군법회의 (GCMCA) 소집권한 관할권에 속한 혹은 미2사단 배속 및 예속된 전 장병에 적용됨
3. 고위급간부 보류 및 통보 정책.
   1. 고등군법회의 RCM 306(a) 조항에 의거, 사단장은 아래 조항 3-3(a)(1) 에 관련된 고위급간부의(임관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을 포함) 위법행위 혐의를 처분할 권한을 보류한다. 위법행위의 정의는 UCMJ 군법 조항상 처벌가능한 위반 및 과실을 의미하며 사소한 교통 위반 등은 포함되지 않음.
4. 위법 행위와 고위급간부 보류 정책 사이의 관계 설명. 미2사단장은 특별재판위원회(STC)로부터 위임받기 전까지 STC가 행사하는 권한 아래 진행되는 위법행위 재판에 관해서는 고위급간부에 대한 혐의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음. 혐의확정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RCM 303A(d)에 의거, 미2사단장은 STC에서 행사거부를 표명하기 전까지 해당 고위급간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없음.
5. 잠재적 피항소인 및 주체(소위급 이상)와 관련된 행정적 수사에 대한 임명권한은 예하부대장이 행사가능함. 하지만, 미육군부정정보프로그램 (AAIP) 에 잠재적 등록 요구에 연관되기에 수사에 대한 승인 권한은 미2사단장에 있음. 그럼에도 E-8, E-9, 그리고 준사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관 임명과 승인에 대한 예하부대장들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금하지는 않음. 다만, 예하부대장은 위임권한을 받지 않은 이상 이미 입증된 위법행위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혹은 비조치) 에 관해 처분할 권한이 없음.
6. SPCMCA 는 고위급간부 위법행위 혹은 혐의 발생 기준 24시간 이내 미2사단장에 전자이메일을 통해 통보할 것임. SPCMCA는 미2사단 법무부에 통보된 문서 사본을 배부한다.
7. 고위급간부 위법행위 혐의가 입증된 경우, 그리고 STC가 위임하거나 행사권을 거부하는 경우, SPCMCA는 미2사단장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해당 법무장교를 통해 사건 처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 건의사항에는 중대장 및 대대장의 의견을 포함할 것임. 미2사단장은 사단장 선에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예하부대에 권한 위임함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심을 내릴 것임.
   1. 본 정책은 RCM 307에 따른 STC의 권한범위에 있지 않은 지휘관을 제대구분없이 기소할 권한에 대해서는 보류 권한이 없음.
8. 특정범죄에 대한 처분 권한 보류에 관해.
   1. SPCMCA선에 보류된 위법행위에 대해. 아래 위법행위에 대한 초기처분 권한은 아래 항목5c에 명시되었듯이 SPCMCA이 보유함. 아래 범죄행위는 사건에 따라 요청시 처분 건의사항없이 예하부대장에게 전달 및 위임될 수 있음.
9. 강간, 성폭행, 강제남색, 혹은 이러한 범죄를 시도한 경우, UCMJ 조항 120, 120b, 120c).
10. 공권집행중 폭행 사건 (조항 128, UCMJ)
11. 가정폭력 (조항 128b, UCMJ)
12. 금지되는 교류 및 친목 (조항 134, UCMJ)
13. 성희롱 (조항 92, 134, UCMJ)
14. 인종차별, 편견,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의 인지된 인종 혹은 실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지향, 성별, 성별 인식, 장애여부 등 을 바탕으로 행해진 폭력행위
15. 그리고 한국인 지역주민 관련 모든 범죄 행위.
    1. 부수적 위법 행위. 육군지시령 2022-10 그리고 육군규정 27-10 조항 17-17에 의거 부수적 위법 행위에 관한 초기처분권한은 SPCMCA를 보유한 대령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류됨. 부수적 위법 행위는 피해자가 행한 위법행위로서 혐의된 성폭력과 연계되어 당시 피해자의 성폭행과 관련된 시간, 장소 및 상황 속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일컫는 바임. 지휘관은 위법행위가 사소한 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하며, 필수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행동조치를 위임할 수 도 있음. 지휘관은 법무처의 자문을 통해 행동을 취할 것임. STC가 위임하지 않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조치할 권한이 없음.
    2. 특정 범죄에 따른 처분 권한에 대한 보류권과 주요 범죄와의 관계. 미2사단장 혹은 SPCMCA는 STC의 행사권한이 있는 범죄에 대해 STC로부터 위임을 받기 전까지는 고위급간부의 범죄행위 혐의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RCM 303A(d)에 의거 “주요 범죄”로 정의된 범죄들은 STC 에서 행사권을 거부하기 전까지 미2사단장은 고위급간부 범죄행위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음
16. 특정 범죄에 따른 의무적 분리 진행. 지휘관은 휘하 장병이 조항 120 (성폭행 및 강간), 120b (아동 성폭행 및 강간), 120c (그 외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128b, UCMJ혹은 식별된 성희롱 조사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기초 조사의 대상이 된 모든 경우에, 해당 장병은 분리 규정에 의거 분리 진행 절차를 밟을 것임. 의무적 분리 초기 진행은 STC가 행사권을 위임하거나 거부한 경우만 가능함. 이와 같은 행정 분리권에 관한 보유 권환은 GCMCA수준에 준함. 본 단락은 군법회의 재판서 모든 관련 범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장병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징계절차에서 무죄로 결정된 장병을 포함한다. 육군명령 2022-13조항 5(d)(2)에 의거 SPCMCA수준에서 성희롱 혐의에 대해 사소한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의무적 행정 분리에 대한 초기 조치를 해야할 의무는 없음.
17. 예하 지휘관은 보류되지 않은 위법 행위 한에서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함. 상급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이 보류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특정한 처분이나 건의를 내리도록 지휘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음.
18. 본 지침서에 관한 담당부서는 미2사단 법부참모임. 연락처는 DSN 756-7425, 담당관은 미2사단 법무부 법무참모임.

CHARLES T. LOMBARDO

Major General, USA

Commanding